

기술기업의 Start up부터 Scale up까지 함께하는
혁신성장 플랫폼

기술보증기금 지원제도 안내



중소벤처기업부



기술보증기금

목차

- I 기관 소개
- II 기술보증 지원제도
- III 주요 보증 프로그램
- IV 기타 지원제도
- IV 보증신청 안내



1. 기관 소개

1. 관련법 및 연혁



설립근거 「기술보증기금법」

❖ 기술보증제도 정착·발전으로 기술중소기업 자금공급을 원활히 하여
지역 균형 발전 및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



1986 ~ 1996

- 1986 기술보증기금법 제정
(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 관한 법률)
- 1989 기술신용보증기금 설립
- 1994 기술우대보증 시행

1997 ~ 2007

- 1997 기술평가센터 개소
벤처기업지원 전담기관 지정
- 2005 기술평가시스템(KTRS)개발
보증연계투자업무 개시
- 2007 기술평가보증으로 일원화

2008 ~ 2016

- 2012 보증연계투자 법제화
- 2014 기술이전·사업화체계 구축
(Tech-Bridge)
- 2016 법상 명칭 변경
(기술신용보증기금 →
기술보증기금)

2017 ~

- 2017 업무감독권 변경
(금융위원회 → 중소벤처기업부)
- 2018 소셜벤처가치평가센터 개소
- 2019 설립 30주년
기술보호업무(Tech-Safe)개시
중소기업 기술진흥 전문기관 지정
- 2021 新기술평가시스템(AIRATE)시행
- 2022 탄소가치평가보증 및
매출채권팩토링 사업 시행

2. 주요 지원제도



➤ 무형의 기술을 대상으로 기술성, 시장성, 사업성 등을 평가하여 금융, 비금융 지원수단으로 활용



II. 기술보증 지원제도

1. 기술보증 개요

❖ 기술보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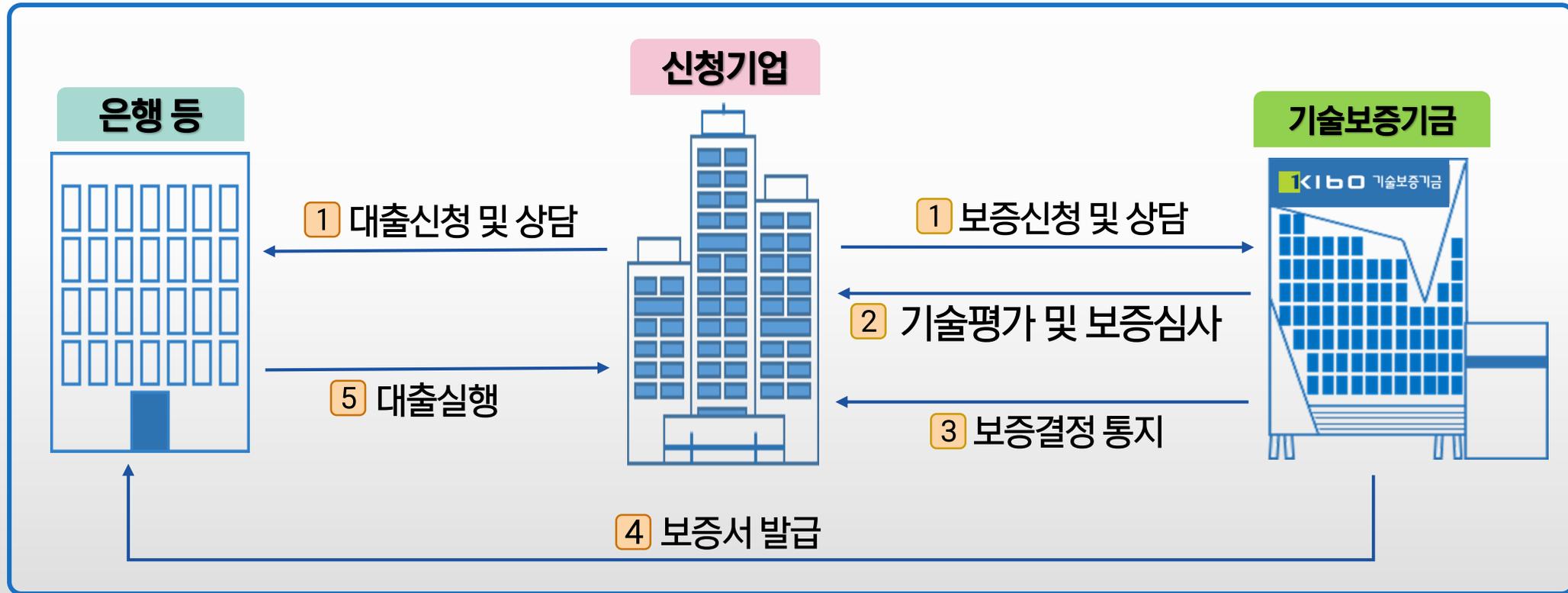
- ◆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에게
기술성, 사업성 등 미래가치 위주로 평가하여 보증을 지원함으로써
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원활하게 자금을 지원받도록 하는 제도

❖ 기술보증 대상기업

- ◆ 신기술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또는 총자산액 5,000억원 미만인 기업

2. 기술보증 지원절차

❖ 기술보증 지원절차도



3. 기술보증 지원을 위한 기술평가

❖ 기술평가

- ◆ 기업이 보유한 기술의 기술성, 시장성, 사업성 등을 종합 평가(금액·등급·의견 또는 점수 등으로 표시)
- ☞ 기업의 신용도, 재무상태에 국한되지 않고 전문적인 기술평가 역량을 바탕으로 기술력과 성장 잠재력을 중점적으로 평가하여 금융지원

❖ 기술평가 역량



4. 기술보증 지원금액

❖ 기업별 지원가능 보증금액의 최대한도

- ◆ 일반한도: 30억원
- ◆ 특별한도: 50억원 (기술집약형중소기업 등)
 - 70억원 (우수기술기업, 혁신성장산업영위, 수출관련자금 등)
 - 100억원 (시설자금)
 - 200억원 (예비유니콘, 소부장 강소기업100+, 혁신기업 국가대표1000)

❖ 최대한도 내 지원 보증금액

- ◆ 운전자금: 자금 용도별 소요자금 범위 내 [예: 1회전 소요자금]
- ◆ 시설자금: 해당 시설의 소요자금 범위 내 [예: 기계 매매계약 금액(부가가치세 제외)]



III. 주요 보증 프로그램

1. 초격차 미래전략산업+ 우대보증

“미래전략산업 초격차 확보, 글로벌 초일류 기업 육성”

◆ 미래성장성이 양호하고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5대 분야, 18대 세부산업 영위기업

❖ 대상기업

5대 분야	첨단제조	에너지	디지털·통신·서비스	자동화	바이오
18대 세부산업	-소재/부품/장비 -우주항공, 해양 -차세대 반도체 -차세대 디스플레이 -차세대 배터리	-차세대 원자력 -수소에너지 -미래에너지	-차세대 통신, 네트워크 -사이버보안 -양자기술 -지식서비스	-AI, 빅데이터 -차세대 모빌리티 -로봇	-레드바이오 -그린, 화이트바이오 -디지털 헬스케어

❖ 지원내용

- ◆ (보증비율) 최대 95% (보증료) 최대 0.2%p 감면
- ◆ (보증금액 산정 우대) 기업별 소요자금의 최대130%까지 운전자금 보증금액 확대

2. 스케일업 보증

“ 高기술·高성장 혁신기업 선별 및 성장 견인, 스케일업 추진 ”

◆ 대상기업

- ◆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초격차 미래전략산업 영위기업
 - 창업 후 3년 초과
 - 최근 3회계년도 중 2개년 평균 매출증가율이 20%이상
 - 기금 기술평가에 의한 기술사업평가등급 BB등급 이상, 기술사업성장성등급 G6등급 이상

◆ 지원내용

- ◆ (보증비율) 최대 95% (보증료) 최대 0.5%p 감면
- ◆ (우대금액) 기업당 최대 100억원(기술사업평가등급 등에 따라 차등)

3. 우수기술 사업화 지원 프로그램(TECH밸리)

“대학, 연구기관, 대·중견기업 연구소 기술인재의 高기술창업 지원 특화 프로그램”

❖ 대상기업

- ◆ 창업 후 7년 이내 & 협약기관 이공계(의학포함) 교수, 석·박사 연구원이 창업한 기업
 - (U-TECH) 대학
 - (R-TECH) 연구기관
 - (M-TECH) 대·중견기업 연구소

❖ 지원내용

- ◆ (사전한도) 기술사업평가등급에 따라 최대 50억원 이내
 - 3년간 경영실적과 연계하여 단계별 지원
- ◆ (보증비율) 95%(창업 후 1년 이내 100%) (보증료) 0.5% 고정보증료

4. 소부장 특례보증

“소부장 기업 육성, 소부장 강국 도약 및 대외의존형 산업구조 탈피”

❖ 대상기업

- ◆ 소부장 으뜸기업, 소부장 강소기업 100+, 소부장 스타트업 100
- ◆ 『소부장 특별조치법』에 따른 소부장 업종 영위기업으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
 - 기술이전기업(기보 테크브릿지 활용)
 - 상생모델 참여 중소기업(소부장 경쟁력강화위원회 선정)
 - R&D 선정 및 추진 중인 기업

❖ 지원내용

- ◆ (보증비율) 최대 95% (보증료) 최대 0.4%p 감면
- ◆ (우대금액) 기업당 최대 30억원

5. 스마트제조서비스 우대보증

“스마트공장 도입기업 등을 우대지원하여
기업현장의 스마트화 지원”

◆ 대상기업

- ◆ 스마트공장 도입기업(예정포함)
 - 스마트공장 정부사업 참여기업
 - 기보 자체판별 기업
 - 첫공장 스마트화 추진 제조 스타트업
- ◆ 스마트공장 공급기업
- ◆ 스마트서비스 기업

◆ 지원내용

- ◆ (보증비율) 최대 100%
- ◆ (보증료) 보증료율 감면 최대 0.5%p

6. 수출중소기업보증

“수출잠재력 확충 및 글로벌 진출 도모, 수출실적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”

◆ 대상기업

- ◆ 1. 수출예상기업(수출실적 비율 10% 미만 or 향후 수출 예상)
- ◆ 2. 수출실적기업(수출실적 비율 10% 이상)
- ◆ 3. 수출주력기업(수출실적 비율 30% 이상 or 수출실적이 1백만불 이상)
- ◆ 4. 수출우수기업(수출실적이 5백만불 이상)
- ◆ 수출선정기업
 - 정부 및 유관기관 선정기업(브랜드K, 수출바우처, G-PASS 기업 등)
 - 수출다변화 성공기업(전기 대비 당기 수출국가 확대 등)

◆ 지원내용

- ◆ (보증비율) 최대 95% (보증료) 최대 0.4%p 감면
- ◆ (정부사업 연계) 중기부 글로벌 강소기업 1,000+ 프로젝트 선정기업 추가 연계지원

7. 해외동반진출 특례보증

“수출 회복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수출 판로 개척 지원”

❖ 대상기업

- ◆ 대기업과 협력하여 해외진출 추진(예정) 중인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
 - 중견기업의 경우 총자산액 5천억원 이하
 - 대기업 추천* 및 해외종속기업을 보유한 국내지배기업 대상
- * 단, 기금과 협약을 체결한 대기업
- ◆ (대상채무) 해외투자자금 또는 해외사업자금

❖ 지원내용

- ◆ (보증비율) 90%
- ◆ (보증료) 고정보증료율 0.5%(취급 후 3년, 경과시 보증료율 0.2%p 감면)
- ◆ (보증한도) 기업당 최대 200억원

8. R&D 보증

“아이디어 단계부터 사업화에 이르기까지 쫓 주기 R&D 금융 Matching을 통한 맞춤형 금융지원 시스템”

❖ 대상기업

- ◆ (개발단계) : R&D 체크리스트(개발단계)를 충족하는 기업
- ◆ (사업화단계)
 - 개발기간 종료 후 3년 이내의 기업자체 R&D 과제
 - 최근 3년 이내 개발성공 판정을 받은 정부출연 R&D 과제
 - 최근 3년 이내 기술이전을 받은 공공연이전 R&D 과제

❖ 지원내용

- ◆ (보증비율)
 - 개발단계 : 95%이내(창업 후 7년 이내 100%)
 - 사업화단계 : 85%이내(정부출연 R&D과제에 대한 보증 95%)
- ◆ (보증료) 0.3%p 감면

9. 지식재산(IP) 평가보증

“IP금융 활성화를 통한 창업, 사업화, Scale-up 촉진”

❖ 대상기업

- ◆ 지식재산(IP)을 개발완료 후 사업화하는 기업으로 기술평가등급이 “B” 이상
- ◆ 지원대상 지식재산(IP)
 - 산업재산권(특허권 등), 저작권, 신지식재산권, 임치된 지식재산

❖ 지원내용

- ◆ (보증비율) 90% ~ 95%
- ◆ (보증료) 0.3 ~ 0.5%p 감면

10. 지식재산(IP) 인수보증

매매, 실시권 허여 등의 방법으로 IP인수 및 사업화 추진에 필요한 기술금융 지원



대상기업

지식재산(IP)의 **인수를 추진 중이거나**, 지식재산 **인수일로부터 24개월 이내 + 기술평가등급(B)**
(지식재산의 인수 및 사업화 단계별로 소요되는 아래의 운전 또는 시설자금 지원)



지원내용

1단계 (인수자금)

지식재산 인수에 필요한 **착수금, 기술료, 기술매매대금, 이전기술 교육비 등**

2단계 (기술완성화자금)

(기술개발자금) 기술인수기간 중 또는 기술인수 후 **추가 개발에 소요되는 자금 지원**

* 인건비, 자체연구개발비, 위탁연구개발비, 기술도입비, 시험생산시설 건설 운전비 등

(시제품제작자금) **디자인, 금형, 재료비 성능인증 등에 소요되는 자금**

3단계 (양산자금)

사업화 또는 제품양산에 소요되는 시설 또는 운전자금

우대사항

(보증비율) 95%(신탁기술 이전은 100%), (보증료) 0.3%p 감면

11. 투자연계보증

“ 벤처투자유치 기업의 Scale-up 지원을 통해 완결형 벤처생태계 구현 ”

‘24년 지원계획
투자연계보증
총 3,500억 원

대상기업

엔젤투자연계보증



3천만원 이상
투자유치

벤처투자연계보증



5억원 이상
투자유치

VC투자매칭 특별보증



2년 이내 20억원 이상
투자유치

‘아기유니콘 선정 기업, TIPS R&D 성공기업 포함(협약기간 이내)

보증금액
산정특례

같은 기업당 5억원까지
투자유치금액과 추정매출액 중
많은 금액의 1/2 이내

같은 기업당 10억원까지
투자유치금액과 추정매출액 중
많은 금액의 1/2 이내

같은 기업당 20억원까지
투자유치금액과 추정매출액 중
많은 금액의 1/2 이내

우대사항

보증비율 및
보증료

100% 전액보증
0.7% 고정보증료율

100% 전액보증
1.0% 고정보증료율

100% 전액보증
0.7% 고정보증료율

12. 탄소가치평가보증

“중소·벤처기업 저탄소 혁신성장 지원,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”

❖ 대상기업

- ◆ 온실가스 감축 성과가 예상되는 ①외부감축기업, ②자체감축기업, ③신·재생에너지 분야 기업에 대한 우대지원

지원유형	① 외부감축기업	② 자체감축기업	③ 신재생에너지기업
대상	우수기술 보유 기술혁신형기업 등	中·高탄소 업종 영위 기술혁신형기업 등	신재생에너지 발전·산업 영위기업
탄소감축 내용	탄소저감 기술 및 제품·부품·소재 사업화를 통해 탄소감축에 기여	기업 內 시설도입(교체), 연료전환 등을 통해 탄소감축 프로젝트를 추진	태양광, 바이오, 폐기물, 풍력, 연료전지, 수력 등

❖ 지원내용

- ◆ (보증료를 감면) 탄소감축 기여수준에 따라 보증료 감면 차등화(0.2% ~ 0.4%p 감면)
- ◆ (추가 한도지원)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량을 화폐가치로 평가하여 기존 운전자금 한도금액에 가산하여 지원(시설자금은 해당 시설 소요자금 이내 지원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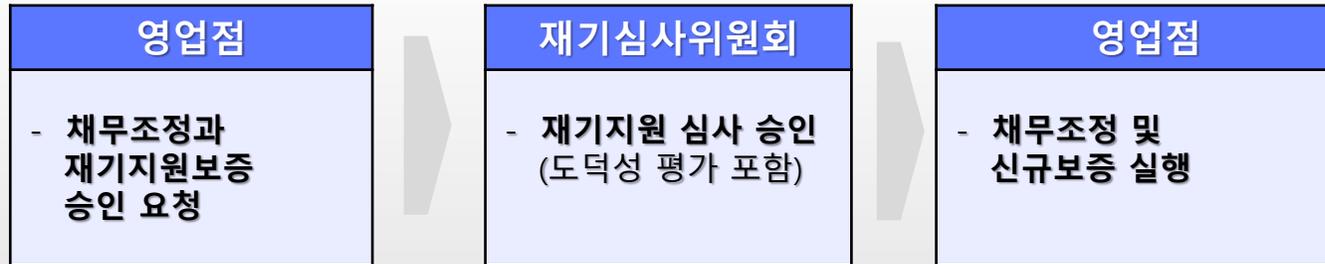
13. 재도전 재기지원보증

“재기가능성이 높은 기업 또는 채무자에 채무조정과 신규 보증을 지원”

❖ 대상기업

- ◆ 기보에 구상 채무를 부담하는 **단독 채무자**
 - 실패기업 또는 실패기업에 변제 책임이 있는 채무자가 운영하는 기업

❖ 신청절차



❖ 지원내용

- ◆ 최대 75% ~ 90% 채무 조정
- ◆ 재기 자금을 위한 신규보증 지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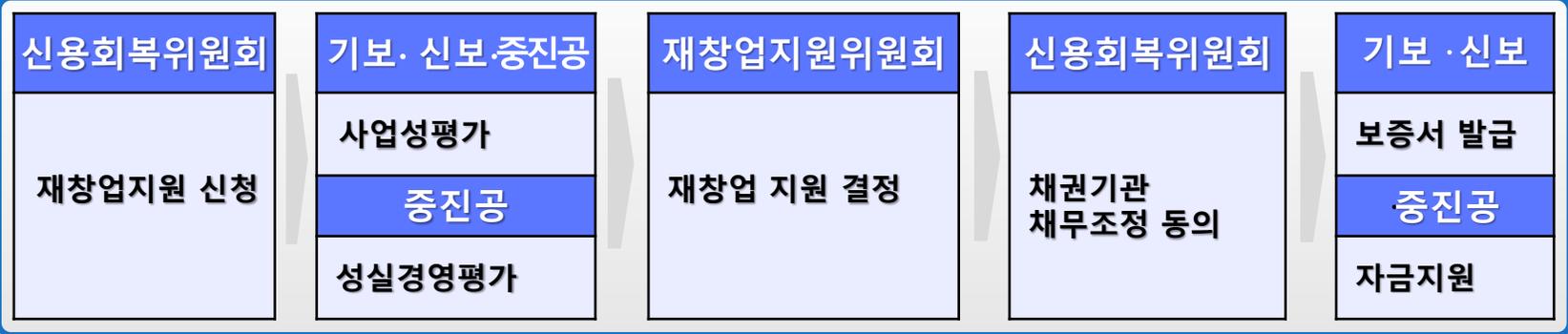
14. 재창업 재기지원보증

“채무부담 완화를 위해 신용회복위원회 등 공공기관이
채무조정과 신규자금 지원”

◆ 대상기업

◆ 다중채무자로서 휴업, 폐업 등 사유로 사업을 계속 할 수 없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의 보증채무를 부담하였던 대표이사 및 실제경영자

◆ 신청절차



◆ 지원내용

- ◆ 최대 75% 채무 조정 (신용회복위원회)
- ◆ 재기 자금(중진공)을 위한 신규보증(기보, 신보) 지원



IV. 기타 지원제도

1. 유동화회사보증

“안정적 장기자금 공급을 통해 스케일업 자금 지원 강화”

❖ 대상기업

- ◆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
 - 기술력 및 신용도 양호한 중소·중견기업
 - (중소기업)기금 기술사업평가등급 BB등급 이상
 - (중견기업)기금 기술사업평가등급 BB등급 이상&신용평가사 회사채등급 BB-등급이상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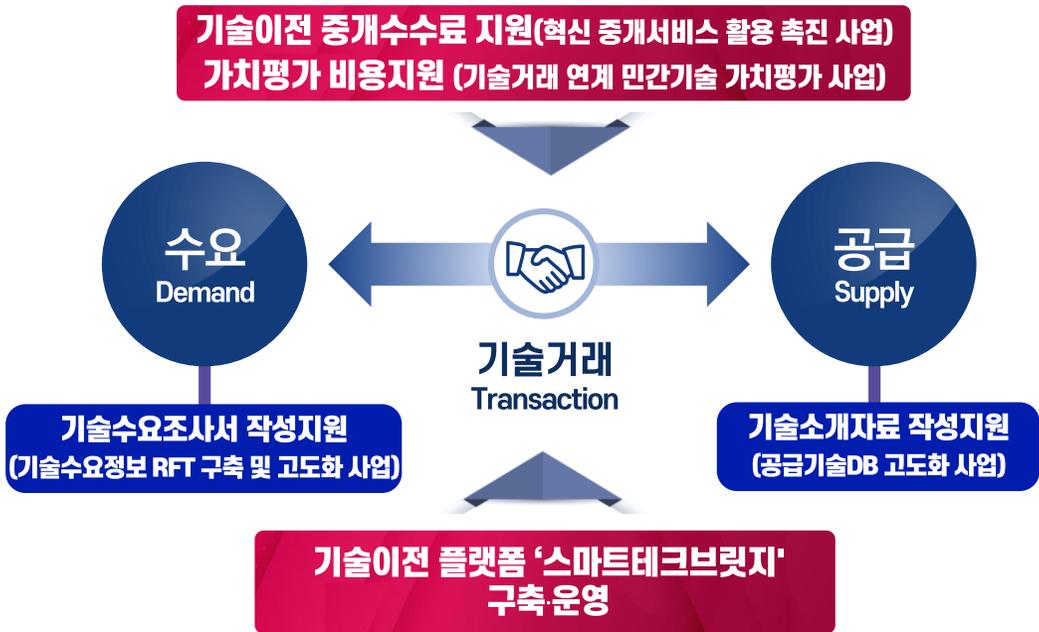
❖ 지원내용

- ◆ (발행금리) AAA등급 무보증 공모사채(3년)민평금리+등급별 가산금리
- ◆ (지원한도) 중소기업 최대 150억원, 중견기업 최대 250억원
(기술사업평가등급, 매출액 등에 따라 차등)

2. 중소기업 기술거래 활성화 지원사업

중소기업의 기술이전 및 사업화 지원을 통한 개방형 기술혁신을 촉진하는 지원사업

【TRACK 1】 기술거래 기반조성사업



【TRACK 2】 기술거래 사업화 통합지원사업



3. 지식재산공제

“중소·중견기업의 IP비용 부담 및 분쟁 리스크 완화”

❖ 공제

- ◆ 가입대상: 중소·중견기업 (단, 담배, 주류 증개·도매업, 주점업 등 가입제한 업종 제외)
- ◆ 가입자 당 최대 3건까지 가입 가능
- ◆ 부금이자율 3.25%(변동금리, 24.1.2일 현재)
- ◆ 1. 적립형 공제 - 부금월액 30~1,000만원, 납부기간 30~70개월
- ◆ 2. 예탁형 공제 - 예탁부금 10~500백만원, 납입기간 2년, 3년, 5년

❖ 대출

- ◆ 대출자격: 부금납부월수 6개월 경과(적립형 공제), 부금납부일수 180일 경과(예탁형 공제)
- ◆ 1. 지식재산비용대출 - 국내외 산업재산권 출원, 지식재산권 심판·소송 등
 - (대출한도) 부금납입액의 최대 5배 이내 (이자율) 3.25%(변동금리, 24.1.2일 현재)
 - (분쟁비용 즉시대출) 지식재산분쟁에 대해 부금납부월수 6개월 미경과 부금납입액의 3배 이내 즉시대출
- ◆ 2. 경영자금대출 - 일시적인 경영자금 필요시
 - (대출한도) 부금잔액의 90% 이내 (이자율) 4.75%(변동금리, 24.1.2일 현재)

4. 보증연계투자



“민간투자시장 보완을 위한 공적 투자기능 확대”

❖ 대상기업

- ◆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
 - 설립 후 5년 이내의 기업
 - 기술평가등급 T18등급 이상인 기업
 - 기보와 보증거래 중이거나 보증 승인을 받은 기업

❖ 지원내용

- ◆ 주식, CB, BW, 조건부지분인수계약 등 벤처투자법상 투자방식

5. 중소기업팩토링

“상환청구권없는 팩토링, 신속한 자금조달과 연쇄도산 방지”

❖ 대상기업

- ◆ 판매·구매기업
 - 신기술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등
 - 기술사업평가등급 B등급 이상

❖ 지원내용

- ◆ (이용한도) 판매·구매기업 30억 (할인율) 연 2.5% ~ 6.5%
- ◆ (지급기한) 팩토링 신청 접수 후 3영업일 이내 대금지급

6. 벤처기업확인평가

“전문평가기관으로서 벤처기업 발굴을 위한 확인평가 수행”

◆ 대상기업

- ◆ 공통요건 : 『중소기업기본법』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
- ◆ 혁신성장유형
 - 기술의 혁신성과 사업의 성장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은 기업
- ◆ 연구개발유형*
 - 기업부설연구소, 연구개발전담부서, 기업부설창작연구소, 기업창작전담부서 중 하나를 보유하고, 연구개발비가 5천만원 이상인 기업
 - 신청일 직전 4분기 연구개발비가 총매출액의 5~10% 이상인 기업 (창업 후 3년 미경과 기업 및 매출액이 없는 기업은 비율 적용 배제)
 - 사업성장성 평가 우수 기업

* 이노비즈 인증 유효기간 시작일로부터 6개월 이내 벤처기업확인 신청기업에 한함
- ◆ 예비벤처유형
 - 법인설립 또는 사업자등록을 준비중인 자
 - 기술의 혁신성과 사업의 성장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은 기업

◆ 지원내용

- ◆ 전문평가기관으로서 혁신성장유형, 연구개발유형, 예비벤처유형에 대한 평가 수행

7. 이노비즈 인증평가

“기술우위를 바탕으로 경쟁력을 확보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(Inno-Biz) 발굴”

❖ 대상기업

- ◆ 『중소기업기본법』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고,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
 - 설립 후 3년 이상이며 정상 가동 중인 기업
 - 제조업, 건설업, 농업, 비제조업, 소프트웨어업, 바이오업, 환경업, 전문디자인업 등 영위기업
- * 숙박업, 부동산업 및 임대업, 오락업 등 일부 업종 제외

❖ 인증절차

- ◆ 온라인 자가진단 650점 이상인 업체를 대상으로 기술보증기금에서 현장실사 및 기술평가시스템에 의거 평가 실시

❖ 인증기준

- ◆ 기술혁신시스템 점수 700점 이상이고, 개별기술평가등급 B등급 이상인 기업

❖ 지원내용

- ◆ 평가기관으로서 이노비즈 인증평가 수행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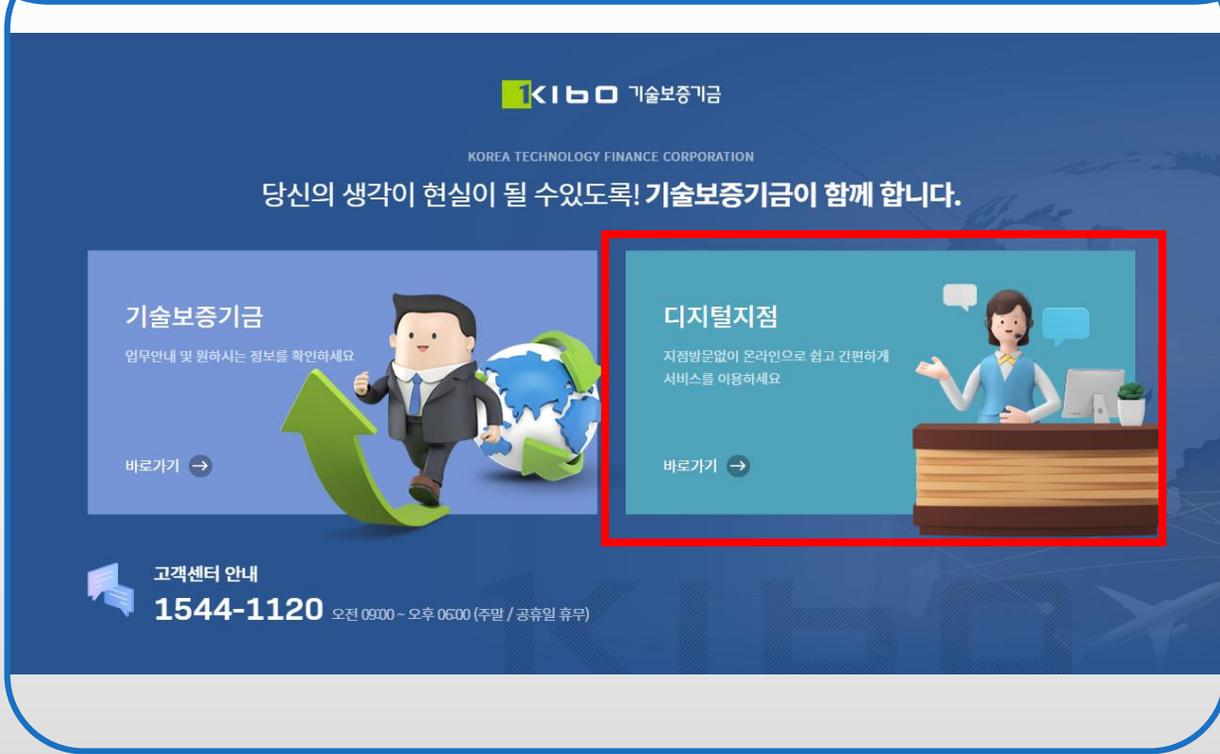


V. 보증신청안내

1. 디지털지점

“고객 편의를 위한 무방문 비대면 서비스 제공”

온라인 기반 영업점: 디지털지점 [www.kibo.or.kr]



- ❖ 보증신청
- ↓
- ❖ 자료제출
- ↓
- ❖ 보증약정
- ↓
- ❖ 보증서 발급
- ↓
- ❖ 보증료 납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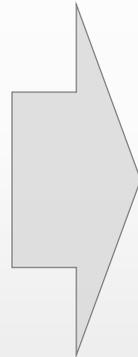


2. 온라인 자료제출 시스템

기존

기술사업계획서, 국세청자료,
행정정보, 금융거래정보,
기타 기업자료 ...

작성/발급 후
직접 서류 제출



온라인 자료제출 시스템

❖ 스마트 자료제출

디지털지점에서
파일 업로드 방식 제출

❖ 자동 자료제출(스크래핑)

디지털지점에서
인증서를 기반으로
해당 자료 발급기관에
자동 접속 제출

자료제출을 디지털지점과 연계하여
서류 발급 최소화 & 제출 절차 간소화

기술기업의 Start up부터 Scale up까지 함께하는
혁신성장 플랫폼

감사합니다